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70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이희원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박춘선, 신복자, 유정희,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황유정,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전용교실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거점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 방법
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운영
5. 융합인재 교육,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교육 등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교실의 설치·활용)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전용교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방법, 절차, 평가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임
- 조례안 검토결과,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거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창의미래교육과 AI·미래교육팀 및 창의융합교육팀¹⁾)하여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2025 서울시 교육청 예산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거점학교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사업예산	사업추진 세부내용
정보 교육 거점학교 운영	121,140	인공지능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과학 교육 거점학교 운영	260,040	과학교육센터 중심 지역 특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대상 과학 교육 활성화
수학 교육 거점학교 운영	680,000	에듀테크 기술 기반 설물, 가상의 수학 교구를 갖춘 거점형 수학클리닉 구축
계	1,061,180	